

## 연구 종료 후 변경계약/공문 제출 안내

본원 지침에 따라 최종 연구비, 연구비집행기간 확인 완료 후

연구비 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IRB 종료보고 승인으로 갈음되지 않음).

IRB에 연구비 및 연구기간 변경 보고를 진행하였더라도

최종 변경된 사항(연구비, 연구비 집행기간)에 대해 변경계약(또는 변경공문) 진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경계약 대신 변경공문으로 갈음하고자 하실 경우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공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부탁드립니다.

### <공문 제출시 필수 기재사항>

- 과제기본 정보 : IRB No(과제번호), 과제명, 시험책임자, 의뢰사
- 변경사항 : 최종 연구비, 연구비 집행기간

#### “연구비 집행기간”이란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 기간은 IRB의 연구기간이 아닌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입니다.

본원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연구비 집행 기간) 동안에만 연구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초기 계약서 상에 기술된 계약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종료시점이 임박하였다면

최종 변경 공문제출시 계약기간(연구비 집행기간)을 여유있게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연장가능한 연구비 집행기간은 IRB 종료보고 승인 후 2년까지입니다.

<변경 공문 예시>

## ○○○ 제약

---

수신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임상시험센터

발신 :

제목 : 연구비/집행기간 변경 확인 요청 건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사항은 연구비/집행기간 변경 확인사항입니다.

- 아래 -

가. 과제번호 (IRB No.) :

나. 과제명 :

다. 시험책임자 : ○○과 ○○○ 교수

라. 연구비집행기간 : YYYY, MM, DD 까지

마. 최종 연구비 : \_\_\_\_\_ 원 (VAT 포함)

○○○ 제약 대표 ○○○ [직인날인]